

교직원 표창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상범위) ① 표창 대상은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장기근속자
2.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3. 학사행정개선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대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
4. 기타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

②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.

제 3 조 (공적심사)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4 조 (근속연수의 계산) ① 근속연수는 본 대학교와 학교법인 호서학원에서 교직원으로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할 연수를 계산한다.

② 휴직기간은 법인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, 제1항의 근속연수에는 휴직기간, 정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, 육아 · 임신 · 출산 · 입양에 따른 휴직기간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.(개정 2017. 9. 1., 2022. 2. 14.)

③ 계약적으로 임용된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7. 9. 1)

제 5 조 (표창의 종류와 부상)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, 표창 시에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거나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근속표창
 - 가. 10년 근속표창
 - 나. 20년 근속표창
 - 다. 30년 근속표창
2. 공로 표창
3. 일반 표창

제 6 조 (근속표창의 시기) ① 근속표창은 개교기념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 전에 근속표창연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상한다.

제 7 조 (표창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없다.

1.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
제 8 조 (대리자의 수령)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게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.

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2. 14.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